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1065호 2019. 4. 12. (금)

선람	기 관 의 장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3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37호 삼척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38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7
○ 삼척시 고시 제4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8
○ 삼척시 고시 제4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10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17호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2
○ 삼척시 공고 제331호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 삼척시 공고 제339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 33
○ 삼척시 공고 제344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8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14호 도로의 지정·공고 ---------- 54
○ 삼척시 노곡면 공고 제2호 도로의 지정(변경)·공고 ---------- 57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3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5.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군 분할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492-80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90-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492-80	20190405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2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오리길 20-19	20190405		20090626	행정구역명, 마을지명사용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2길 86	폐 지	20190405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168-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2길 104	20190405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5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89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496-226	20190405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삼척시 고시 제2019 - 37호

삼척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임(요금)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9일

삼 척 시 장

1. 운임조정

구 분	기 존	조 정	비 고
기본운임 (2㎞ 까지)	2,800원	**3,300원**	중형택시 운임 기준
거리운임	152m당 100원	**133m당 100원**	
시간운임 (15㎞/h이하 주행시)	40초당 100원	**33초당 100원**	
심야할증 (00:00 ~ 04:00)	20%	20%	
시계외 할증	동해방면 60%, 태백, 경북울진방면 70%	동해방면 60%, 태백, 경북울진방면 70%	
미터요금의 20 ~ 60% 할증지역(복합할증지역)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 적용시기 : **2019. 4. 19. 00:00부터 시행**

3. 적용기준

○ 기본운임 : 2km까지의 운임
○ 거리운임 : 기본운임거리 이후 주행거리에 따라 운임적용

○ 시간운임 : 15km/h이하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시간운임 적용

○ 귀로운임 : 지역에 상관없이 주행요금만 적용

▷ 133m당 100원, 33초당 100원

○ 할증운임 적용

▷ 복합할증 : 거리운임 및 시간운임의 60% 할증(※붙임 복합할증요율표 참조)

▷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00 ~ 04:00까지 운행한 운임의 20% 할증

▷ 시계외할증 :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동해방면 60%,

태백방면 70%, 경북울진방면 70% 할증 적용

○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100원단위로 사사오입 적용

○ 위 기준외의 세부적용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1169호, 2019.3.13.)에 의함.

4. 요금조견표 비치

○ 요금미터기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검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수리검정 완료 전까지는 요금조견표를 차내 앞좌석과 뒷좌석에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각각 1매씩 비치하여 운행

○ 요금미터기 수리검정 완료 시 차내에 비치한 요금 조견표 즉시 회수

○ 요금미터기 수리검정 완료시까지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조치

5. 업체 경영개선 및 택시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서비스 개선대책 철저 시행

○ 경영개선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및 적극 시행

6. 문 의 처 : 삼척시 교통행정과 (☎033-570-3939)

삼척시 택시구간별 복합할증요율표

◎기본운임(2km):3,300원 ◎거리운임:133m당 100원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

기점	종점	할증율	기점	종점	할증율	기점	종점	할증율
남양동 ~ 도계읍 방면			도계읍 ~ 남양동 방면			남양동 ~ 원덕읍 방면		
남양동	무사리	30	도계읍	마교리	40	남양동	맹방리	30
	사둔리	40		늑구리	40		금계1리	40
	내미로			점리	50		금계2리	50
	미로면소재			고사리			근덕면소재	20
	하거노2리			발이리			덕산리	40
	고천리			마차리			교곡리	
	상사전리			대평리			하월산리	50
	번천리	50		신기리			광태리	40
	숙암리			대기리			통막리	
	광동리			대이리			대진리	
	장전리			천기리			양리	50
	추동리			상정리			대평리	
	역둔리	60		하정리			마읍리	
	중봉리			상거노			궁촌리	
	갈전리			하거노			구마리	
	토산리			미로면소재			문암리	
	상거노리	40		사둔리			초곡리	
	하정리			무사리			용화리	
	상정리			남양동			장호리	
	천기리		도계지역				갈남리	
	상천기리		읍내	나한정	50		임원리	60
	하반천리	50		홍전골			노곡리	
	상반천리			심포리			원덕읍소재	
	고자리			구사리	60	원덕지역		
	하월산리			신리		읍내	이천리	60
	활기리			상덕리	40		옥원2리	
	신기리			황조리	60		길곡리	
	대기리		원덕읍 ~ 남양동방면				월천리	
	대이리	50	원덕읍	노곡2리	50		노경리	50
	대평리			노곡1리			산양리	
	마차리			비화리			기곡리	
	발이리			임원리			탕곡리	60
	고사리			갈남리			오저리	
	늑구리			장호리			풀곡리	
	마교리			용화리			동활리	
	도계리			문암리			신리	
				궁촌리	60			
				통막리				
				광태리				
				근덕면소재	50			
				맹방리	60			
				남양동				

삼척시 고시 제2019-38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삼척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0.

삼 척 시 장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685,128,375	546,838,207	138,290,168	25.3%
일 반 회 계	632,516,648	504,216,311	128,300,337	25.5%
특 별 회 계	52,611,727	42,621,896	9,989,831	23.4%
상 수 도 사 업	23,364,308	17,843,708	5,520,600	30.9%
하 수 도 사 업	6,083,759	4,128,710	1,955,049	47.4%
주 택 사 업	65,592	65,000	592	0.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883,826	14,883,826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655,000	575,000	80,000	13.9%
의 료 급 여 기 금	1,132,533	1,132,533	-	-
자 활 기 금 운 영	1,390,460	1,159,000	231,460	2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320,618	565,000	755,618	133.7%
주 차 장	949,349	949,349	-	-
임대아파트관리운영	2,766,282	1,319,770	1,446,512	109.6%

삼척시 고시 제2019 - 4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철거)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2.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군 분할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972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2-1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972	20190412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87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528	20190412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 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121-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근로 19	20190412		20090626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연결구간 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근덕)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39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3길 99-457	20190412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늑구점리길분기)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76-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3길 110	20190412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늑구점리길분기)
6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3길 18-16 (정상동)		20190412	건물철거	20090626	지역지명(봉황촌), 일련번호방식활용
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33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521	20190412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0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1길 33	20190412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장호길분기)

삼척시 고시 제2019-4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삼 척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신기육교	삼척시 신기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9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9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	
천기육교	삼척시 미로면	건설과			
도원교	삼척시 도계읍	건설과			
자원교	삼척시 자원동	건설과			
관수교	삼척시 노곡면	건설과			
정봉교	삼척시 원덕읍	건설과			
하군천교	삼척시 노곡면	건설과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상거노교	삼척시 미로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9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9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	시설물번호 @BR20040000820 상거노2교 명칭오기 L=162m 준공:04.11.29
상거노1교	삼척시 미로면	건설과			L=108m 준공:04.12.13
하거노2교	삼척시 미로면	건설과			시설물번호 @BR20010000888 하거노1교 명칭오기 L=105 준공:04.06.11
하거노2교	삼척시 미로면	건설과			L=51m 준공:87.06.30

삼척시 공고 제2019-317호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간 상이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대민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 청구 등 개정(안 제23조②)
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다.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현황 개정(안 별표 1)
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2)
마.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7)

3. 의견제출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도시과
- 전 화 : 033-570-3448
- 팩 스 : 033-570-3182
- 전자우편 : jjunyl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삼 척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표 1]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7조제1항 관련)

위 치		설치광고물				비고
주 소	이격거리	종류	수량	규격(m) (가로×세로)	전체 높이 (m)	
삼척시 교동 산515-15	일반도로 로부터 30m 이상	지주이용 간판	1 (2면)	10 x 5	10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동지역	이행강제금 ※ 읍면지역
가. 벽면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미만		
- 2㎡ 미만	20만원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2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3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180만원
4) 면적 20㎡	200만원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9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2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3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40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20㎡	200만원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9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33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38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50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60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9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0㎡ 이하	110만원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16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10㎡	200만원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9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33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38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55만원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20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240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25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26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280만원
5) 연면적 50㎡	300만원	30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9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30만원	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4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5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60만원
- 연면적 20㎡	75만원	65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30만원	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4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5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60만원
- 연면적 20㎡	80만원	7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150만원	150만원
- 연면적 10㎡	160만원	16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45만원
다) 연면적 5㎡	50만원	50만원
- 5㎡ 초과하는 면적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동지역	과태료 ※읍면지역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13만원	12만원
- 0.5㎡ 이상 0.8㎡ 미만		22만원	17만원
- 0.8㎡ 이상 1㎡ 미만		32만원	25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42만원	33만원
- 1.3㎡ 이상 1.6㎡ 미만		50만원	42만원
- 1.6㎡ 이상 2㎡ 미만		64만원	58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75만원	67만원
- 2.3㎡ 이상 2.6㎡ 미만		100만원	92만원
- 2.6㎡ 이상 3.0㎡ 미만		129만원	117만원
라) 연면적 3㎡		130만원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8만원	7만원
- 0.5㎡ 이상 0.8㎡ 미만		12만원	10만원
- 0.8㎡ 이상 1㎡ 미만		14만원	13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25만원	17만원
- 1.3㎡ 이상 1.6㎡ 미만		33만원	25만원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8만원	50만원
- 2.3㎡ 이상 2.6㎡ 미만		67만원	58만원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75만원
라) 연면적 3㎡		80만원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13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22만원	17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22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25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33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58만원
4) 면적 10㎡ 이상		80만원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16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공고 제2019 - 331호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9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가스 미공급 세대들에게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 지원사업에 생활필수품 구입비을 신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2019.12.31) 도래이전에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설치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 세부 항목내용에「생활필수품 구입비(일상생활 식용음료 및 필수용품) 신설 : 제5조 제2항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19.12.31⇒2024.12.31) 연장 : 제8조 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에너지정책실

○ 전 화 : (033) 570-3747 ○ FAX : (033) 570-3181

○ 전자우편 : jhk58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가. 붙임문서

-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 이라함은 연료구입비(유류, 가스, 연탄), 건강의료비용(진단, 진료, 약품), 생활필수품구입비(일상생활 식용음료 및 필수용품)를 말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료복지비 보조사업 등) ② 제1항 제2호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이라 함은 연료구입비(유류, 가스, 연탄), 건강의료비용(진단, 진료, 약품)을 말한다.	제5조(연료복지비 보조사업 등) ② ----------약품), 생활필수품구입비(일상생활 식용음료 및 필수용품 등)를 말한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 등)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 등) ② ------- 2024년 12월 31일---------.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9-339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0.

삼 척 시 장

1. 예 고 명: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 목적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이 필요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기간: 2019. 4. 10. ~ 2019. 4. 29. (20일간)
5. 공고방법: 시보,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9. 4. 10. ~ 2019. 4. 29.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FAX: 033-570-313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기획감사실(☎033-570-3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붙임 2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행정예고명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구분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19-344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삼 척 시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19.7월)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의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 2019.7.1.)에 따라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 감면기준의 장애정도를 각 호와 같이 구분(안 제2조)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의견제출

○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삼척시장(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시정소식-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70 - 3297
- 팩 스 : 033 - 570 - 3134

붙임 1.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 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 ---------- ---------- ---------- ---------- ---------- ---------- ---------- ----------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 설>	

현 행	개 정 안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삭 제〉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납루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

[현행법령]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삼척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07.14., 2019.3.2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07.14.>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7.07.14.>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7.14.>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개정 2019.3.29.>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8.1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공제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 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8.10.>

제8조(삼척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해당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07.14., 2019.3.29.>

제11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07.14.>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8.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개정 2018.8.1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8.1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 칙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단서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서	
	수정안	검토사유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등 -

3. 미첨부 사유

- 지방세관계법(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직접 발생 비용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삼척시 세무과장 민병노
연락처	(033) 570-3297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9-14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00-12번지 상에 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삼 척 시 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00-12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36.4m, 너비 : 4.0m, 면적 : 67㎡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장호리	300-12	대	243	222	21	김문*
근덕면 장호리	298	대	89	43	46	강원도 교육감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 로 관 리 대 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2019-14	
대지위치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지번 300-12
건축주 김 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년**월**일	허가(신고)번호 2019-근덕면-신축신고-11
도로길이 36.4m	도로너비 4.0m	도로면적 67㎡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장호리 300-12	21	2019.03.28	김문*	19**.**.20	김문*
장호리 298	46	2019.01.02	강원도교육감	432	강원도교육감

작성자: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정 철 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김 충 용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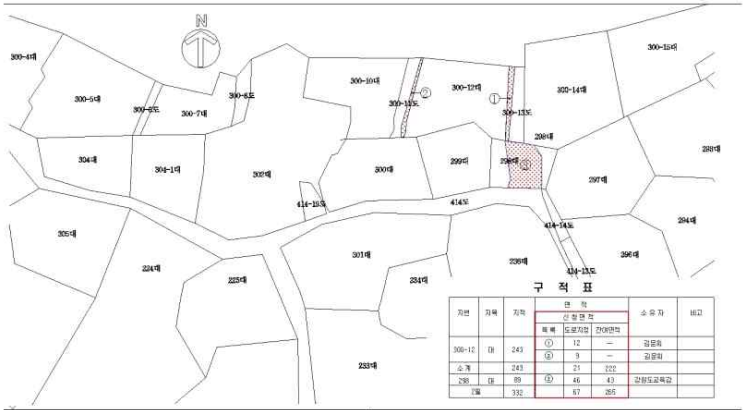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

삼척시 노곡면 공고 제2019-2호

도로의 지정(변경)·공고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67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삼 척 시 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67번지외 1필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27.9m, 너비 4m, 면적 10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노곡면 상천기리	67	전	4,225	4,146	79.0	김인*
노곡면 상천기리	115-3	하천	1,131	1,110	21.0	국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 로 관 리 대 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대지위치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지번 67
건축주 김재*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년 **월 **일	허가(신고)번호 2018-노곡면-신축신고-4
도로길이 27.9m	도로너비 4m	도로면적 100㎡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상천기리 67	79.0	2019.03.20.	김인*	19**.**.**.	김인*
상천기리 115-3	21.0	2019.03.20.	국	232	국

작성자 : 직급 지방행정주사 성명 김남윤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지방행정주사 성명 김남윤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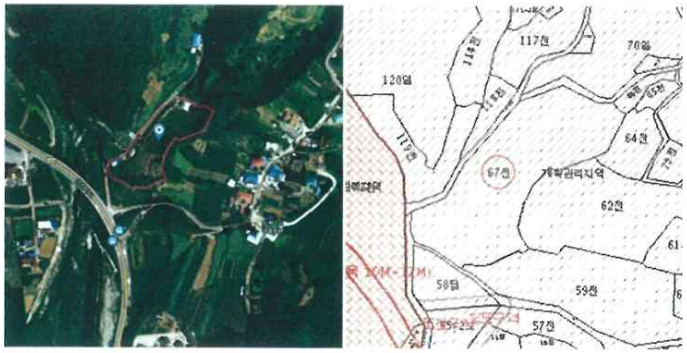

위치도	축 척 <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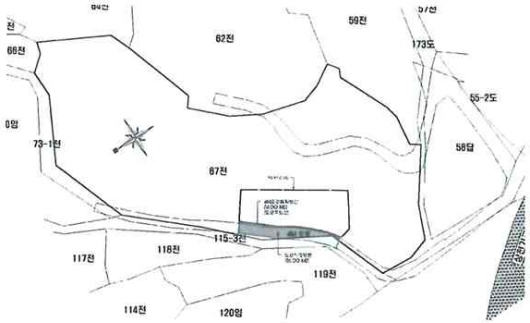

현황도	축 척 [ ] 1/600, [ ] 1/1,200